
Ⅱ. 보험제도 변화

1. 회계 및 계리제도 변경

가. 회계연도 변경

- 2013년부터 회계연도가 3월 마감에서 12월 마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FY2013 회계연도는 2013년 4월~2013년 12월까지 9개월간임.
 - 보험업법 제118조(재무제표 등의 제출)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(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)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.
 - 보험업법 시행령 제61조(장부폐쇄일) 법 제118조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12월 31일을 말함.

나.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강화

- 보험회사들의 과도한 저축성보험 판매가 향후 저금리 환경 지속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준비금 제도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보장기능 제고를 유도함.
 -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여 준비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 평가 시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상품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이율과 일관되도록 결정함(표준이율 개선).

-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공시기준이율에 $\pm 10\%$ 이내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산출함.
-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 시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로 산출한 보증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률 중 높은 율을 적용함.
- 보험계약의 분류기준이 되는 위험 보장 기능을 현행 5%에서 10%로 상향 조정하여 보험상품의 보장기능을 강화함.

다. 표준위험률 개선

-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표준책임준비금 계산 시 사용하는 표준위험률 조정을 추진함.
 -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담보는 하향조정하고 암, 입원 등은 상향조정할 예정이다,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담보를 23% 하향조정할 예정이다.

라.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본격도입

-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제고 및 보험소비자 상품선택폭 확대 등을 목표로 2010년 4월 도입된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가 2013년 본격 도입됨.
 - 금감원은 2010년 4월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를 도입하였으며, 제도도입 후 3년간은 현금흐름방식과 3이원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동 제도의 정착률을 유도함.

2. 개별 상품 제도 변경

가.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 마련

- 보험료가 저렴한 표준형 실손 보험상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함.
 -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, 보험료 갱신 기간 단축, 보험기간 현실화,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,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,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.

나.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

- 2002년 전면 개정 이후 10년만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함(2013년 4월부터).
 -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 재고, 면책조항에 대한 피보험자 개별적용 확대, 약관 설명의무 강화, 보험금 지연지급에 대한 불이익 부과, 보상과정에서 불성실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함.

다. 자동차보험금 지급 제도개선 추진

-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 개선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적극 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향후 미지급되는 사례 발생을 억제
 -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, 지급 안내 강화 및 지급 시스템 개선, 보험금 지급계좌등록 등을 추진함.

라.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

-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 시 비과세 배제,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 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등.
 -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에서 배제하며, 따라서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됨.
 -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 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명의변경 기준일로 각 계약자별로 계산함.

마.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방안

-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 간 거래한도가 현행 70%에서 50%로 축소되며 당국은 향후 퇴직연금 시장여건 등을 살핀 후 30%까지 지속적으로 한도를 낮출 예정임.
- 한편, 퇴직급여 총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는 2013년 15%, 2014년 10%, 2015년 5%, 2016년 0%로 매년 5%p씩 축소됨.

3. 소비자보호

가.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

- 상품개발, 판매단계부터 보험사기 가능성 최소화 노력, 민관 및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, 보험사기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.

- 상품출시 전 보험사기 영향평가 의무화, 인수심사 강화를 통해 부정목적의 계약 차단, 보험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중·활용, 자살에 대한 보험회사의 무보장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함.

나. 소비자중심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

-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, 미흡한 공시수준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.
 - 사업비 수준,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공시, 핵심상품설명서 제시,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한 수수료 부담 경감 유도,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함.